

제2차 규제개혁점검회의의 지역현장 규제개선 사항

2015.10.19 (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① 공장증설에 따른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의 합리적 기준 적용 (LG화학)

- LG화학은 1976년 이후 여수산단 내 924천㎡의 부지에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던 중 추가 설비투자가 필요해 인근 부지 615천㎡을 매입하였는데 최근 추가부지에 공장 증설을 계획하다 문제가 발생하였다.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가 된 사업장은 면적이 3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체 부지의 강수량을 감안하여 기존부지와 추가부지에 각각의 비점오염저감시설하여야 했다.
- 그러다보니 부지 면적의 증가에 따라 기존 부지와 신규 부지에 약 20억 원에 달하는 저감시설 설치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더군다나 기존 부지에는 각종 건축 설비 시설이 밀집하여 설치 공간 마련이 난감하게 되었다.
- 이러한 상황을 접한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전문가가 공동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부지의 지형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 기존 부지와 신규 부지 사이에 하천을 경계로 공장등록부상 분리되어 있기에 면적산정 시에도 별도로 산정이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게 되어 관련 규정의 위배사항이 아니었다.
- 이로써 신축 부지 한 곳에만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부지 공간 활용은 물론 저감시설 설치와 각각의 관리비용의 절감, 그리고 설비 투자 지연문제가 일거에 해소되었다.

② 농공단지내 자체폐수처리시설 허용 (참프레)

- (주)참프레는 지난 2013년 초 전북 부안 제2농공단지에 육계 가공공장을 준공 운영하여 그동안 600명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매출 2,180억원 달성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다.
- 최근 들어 육계 수요 증가 등으로 생산을 확대하려 했지만, 일일 폐수배출한도 (4,250톤/일)로 인해 공장가동을 70% 밖에 할 수 없어 지난 4월 개최된 전북

농공단지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일일 배출량 2,000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자체폐수처리시설 허용을 건의하였다.

- 그러나 자체폐수처리시설은 일일 폐수배출 2,000톤 이하 업체 만 설치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과 소농공단지 조성취지, 집적화를 통한 효율적 오염원 관리, 악취로 인한 주민 반발 등에 따라 진척이 되지 못한 상황에 처했다.
-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는 자체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인근에 조성예정인 제3농공단지 내 종말처리장 증설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대안으로 제시하여 경제 활성화는 물론 250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③ 한국표준산업분류 '3D프린터 제조업' 분류기준 마련 (지앤씨)

-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에서 풍력발전기 등을 생산하는 지앤씨사는 최근 제품 다변화를 위해 3D프린터를 개발하였으나, 산단 입주시에 '3D프린터 제조업'에 대한 명확한 분류가 없어 '컴퓨터프린터 제조업(26323)'으로 적용되어 입주 업종에서 제외되어 생산에 애로를 겪었다.
- 최근 3D프린터 제조업은 대표적인 첨단기술 산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 받고 있지만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업종 분류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이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하여 산업단지 입주나 공장등록 등 경영 활동 과정에서 애로를 겪었다.
-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통계청과 협의하였고, 통계청은 신속히 대처하여 '15년 10월까지 3D프린터 제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 코드 색인에 반영키로 한 바, 이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④ 중소 조선업체 조달 참여 및 실적인정 기준 명확화 (푸른중공업)

- 300톤 미만 중소 조선업체들이 정부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직접 생산증명서 및 선박생산 실적증명서 제출이 필요하지만, 관련규정 등이 까다로워 입찰 참여가 어려웠다.
- 그동안 중소기업 직접생산증명서는 선박제작시 필요한 선대가 바다에 접해있

어야 발급이 가능했지만, 300톤 미만 선박들의 경우에는 육지에서 제작 후 바다로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 개선이 필요하며,

- 또한, 해외에서 수주한 선박생산 실적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입찰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해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는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입찰행정 개선 등을 신속히 마무리 해 금년 하반기부터 정부조달 입찰이 가능하게 되었다.

⑤ 한시적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타지역 영업신고 방식 개선 (산들래)

- 전남 장성에 소재한 김치 제조업체인 산들래(주)는 제품 홍보차 원거리 지역 식품행사에 참여하는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여야 하기에 행사 전일 그 지역 관할 관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 식품업체는 타 지역의 식품행사 참여를 통한 제품 홍보 및 판매가 매우 중요

- 영업신고 내용은 간단한 서류 확인 방식의 공문을 발급받는 것이었으나, 행정관청 방문에 따른 비용과 수고로움이 번거롭고, 날이 더울 때에는 김치가 시어버리는 등 보관 문제가 발생하여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 이와 같은 불편사항에 대해 식약처에서는 영업자 편의 및 행정절차 개선을 위하여 행자부에 새올행정시스템의 민원 신고 기능 개선 요청 완료 ('15. 9. 7)한 상태이며, 행자부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한시적 영업신고를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 중으로 '16년 4월 이전 완료될 전망이다.

⑥ 육상해수양식 어업 허가기간 만료시 허가 연장 요구 (전남 서부어류양식수협)

- 정부의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형태변화를 장려한 이후 육상 양식업이 활발하게 성장하였으며, 특히, 완도군은 지리적 환경과 여건이 좋아 양식 산업이 약 1조원이 넘는 시장을 형성하는 지역 전략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기간은 5년으로 기간 만료 후에는 신규 신청을 통해 양식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어업을 생계로 하는 주민들이 많다보니

허가건수가 연 500건을 초과하여 신청과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 그런데 같은 사업장에서 허가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도 신규 허가 신청시 갖추었던 시설의 설계도를 포함한 계획서와 배치도 등 모든 서류를 갖추어야 하기에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 이러한 불편사항에 대해 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기존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대상의 시설물이나 구조물 등의 변경이 없는 허가 갱신시에는 종전 제출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⑦ 광주 광산업 임대단지 분양전환 및 전대허용 (옵토닉스)

- '03년 광주 광산업집적화 임대전용산업단지 내 (주)옵토닉스 등 입주 사업체는 산단 부지가 광주광역시 소유이고, 건물은 임대종료 후 원상복구해야 하기에 담보여력이 없어, 금융대출에 의한 선제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웠다.
- 또한, 중소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인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광산업 협력사·계열사 등 연관 업종이 인근에 위치하여야 하는데 산단 내에는 연관 업종에 대한 전대가 금지되어 있어 그간 지속적으로 분양전환과 전대 허용을 건의하였다.
-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광산업집적화단지가 국내 유일의 光클러스터로 광산업 육성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실현 가능한 광산업 집적화단지 개선방안과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 '16년 3월에는 광산업 임대단지 분양 전환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광산업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